

# 保證信用狀規則의 特性에 관한 研究

-信用狀統一規則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李 忠 烈\*

- 
- I. 序 論
  - II. 保證信用狀의 概念과 活用
  - III. 保證信用狀에 관한 國際 法規
  - IV. 貨換信用狀統一規則과의 主要 特性 比較
  - V. 結 論
- 

## I. 序 論

유럽지역과는 달리, 은행이 他人의 債務에 保證하는 행위를 判例에서 權限 밖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던 미국에서 이에 대한 迂廻의인 방법으로 2차 대전 이후 도입되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保證信用狀이다. 따라서 과거 150여년간 이용되어온 貨換信用狀에 비하면 그 역사가 日淺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경우, 국제거래의 보증이나 대금 결제방법으로서 保證信用狀 거래액은 商業信用狀을 이용하는 거래액을 훨씬 上廻한다.

이처럼 保證信用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保證信用狀이 보증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의 대금징수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商業信用狀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래에는 保證信用狀이 무역외거래에 따른 지급보증 예컨대, 入札保證이나 契約履行保證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무

---

\* 松源大學 事務自動化科 專任講師.

1) Cherian Thomas, "Standby credit is like an umbrella", August 1999.(<http://www.business-standard.com>)

역대금결제용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商業信用狀 대신에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는 商業信用狀 거래에 비해 아직은 保證信用狀의 활용이 그리 활발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발행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미국과의 상거래 비중이 크므로 향후 保證信用狀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保證信用狀 거래를 規律하는 國際規範은 지금까지 주로 “貨換信用狀統一規則”(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 UCP, 이하 ‘UCP’ 또는 ‘信用狀統一規則’으로 함)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런데 UCP는 본질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매매에 사용되는 商業信用狀 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保證信用狀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保證信用狀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과 爭訟을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國際保證信用狀規則”(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 이하 ‘ISP’ 또는 ‘保證信用狀規則’으로 함)이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 사용자들이 아직 UCP에 익숙하고, 또 ISP도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UCP와 선택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많은 법적 해석과 관습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UCP와 비교하여 새로 등장한 ISP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ISP 적용에 一助하고자 한다.

## II. 保證信用狀의 概念과 活用

### 1. 保證信用狀의 概念

保證信用狀은 信用狀統一規則(UCP 500)이나 미국 統一商法典(UCC)에서도 保證信用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미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 CFR)에 의하면 “保證信用狀이란 개설의뢰인의 借入金, 先給金 또는 다른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에 의해 상환하기 위

2) 대한상공회의소, 스탠드바이신용장 통일 규칙, 1999, p.3.

하거나, 또는 개설의뢰인이 이행해야 할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擔保하기 위하여 개설인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신용장(또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약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sup>

즉 商業信用狀의 경우 수익자가 선적서류 기타 신용장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시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반해, 保證信用狀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 확인서를 제시하고 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保證信用狀은 상품매매의 경우보다는 마치 보증서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은행들은 보증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증서 대신 保證信用狀을 발급하고 있다.

保證信用狀은 개설의뢰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수익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여 제시하고 이에 의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개 첨부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여음발행을 요하지 않고 이용 비용이 저렴하며 아울러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므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보증은 主債務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보증의 속성인 附從性을 배제한 독립적 은행보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결국 保證信用狀은 신용장의 형식을 빌어 독립적 보증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 2. 保證信用狀의 活用

保證信用狀은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또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의 보증 행위는 보험회사나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보증회사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은행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국제공사 입찰이나 국제계약에서는 국제적 신용도가 있는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므로, 보증서 발행이 곤란하게 된 은행에서 이에 대한 代案으로 신용장에 보증의 성격을 가미한 保證信用狀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保證信用狀의 용도에 거의 제한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어느 한 당사자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에도 이용될 수 있다(J. F. Dolan, 1991, para.1.06, pp.1-22~1-23). 대개 履行保證, 債務保證 및 약속어음

3) Title 12 CFR 208.24 (a) [Jan. 1, 2000].(<http://frwebgate1.access.gpo.gov>).

의 擔保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 스포츠 선수에 대한 연봉지급 보증이나 권투선수에 대한 對戰料 지급의 보증, 연방정부의 자금 양도 보증 그리고 심지어는 집단 소송의 해결 보증용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표 1>은 1973년 이후 미국의 주요 연도별 保證信用狀 발행액이 계속 증가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7년까지만 해도 商業信用狀 거래액에 비해 保證信用狀 거래액이 5배 수준이었으나 1999년도에는 7배로 증가하였으며, 건당 평균 거래액도 350만 달러로서 이 역시 환환신용장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Biederman, David, 1999, p.17).

<표 1> 美國의 主要 年度別 保證信用狀 發行額

단위 : 억달러

년도	1973	1978	1986	1995	1997	1998	1999
발행액	60	170	2,500	4,000	4,500	7,000	7,750

자료 : Biederman David, J. E. Byrne, Cherian Thomas, B. G. Affaki의 논문에서 발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무역회사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채권확보의 수단이나, 현지 물품구입대금의 決濟資金을 현지에서 용자받고자 하는 현지금융의 담보로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건설계약에서의 입찰보증 등은 주로 支給保證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은행의 거래 관행상 保證信用狀과 支給保證書를 다같이 對外支給保證으로 취급하므로 양자간의 큰 구별이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保證信用狀의 확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保證信用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고중현, 1992, p.14).

한 연구에 따르면 1996년도에 우리나라의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保證信用狀은 110건, 458백만달러이고, 은행보증서는 133건, 559백만달러이어서 이를 합하여 243건, 1,017백만달러이다(박석재, 1997, pp.90~91). 이는 1992년도에 우리나라의 3개 은행에서 保證信用狀과 은행보증서를 합하여 236건, 46백만달러를 발행한(김용범, 1993, pp.52~54)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이다.

### Ⅲ. 保證信用狀에 관한 國際 法規

#### 1. 契約保證에 관한 統一規則

1970년대 이후 중동의 석유부국들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거대한 공사를 發注하였고 낙찰자들인 외국의 시공사들에게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독립적 보증서를 요구하였다. 당시에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독립적 보증은 채권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되고 그 형식도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독립적 보증을 規律하는 法理도 각국의 정책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통일된 법원칙의 확립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차원에서 요청되었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契約保證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 URCG)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칙은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들은 요구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는 국제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독립적 보증이나 保證信用狀의 관행에 맞지 아니하였다. 즉 국제거래에서 채권자들은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서 제출과 같은 요건만 충족하면 보증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무조건적 또는 독립적 보증을 선호하였으나, 이 URCG는 그러한 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이 URCG는 보증인의 책임이 원인관계에 연결되는 條件附保證을 규율한 것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보증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것의 대부분이 이른바 무조건적인 보증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증을 규율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實效성이 없었던 것이다.

4) URCG 제9조. 이행보증이나 선수금환급보증시 수익자가 대금을 청구할 때 그 청구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 또는 주채무자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음.

## 2. 請求保證에 관한 統一規則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이 국제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증 관행을 규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여 별로 이용되지 못하였으므로, ICC는 무조건적이며 독립적인 보증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請求保證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이다.

동 규칙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請求(要求拂) 保證에 적용된다.<sup>5)</sup> 즉, 수익자가 보증서나 보증약정의 조건에 합치하는 청구를 하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여부는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밖에는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규칙이 규율하는 거래는 신용장과 같이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원인거래와는 분리, 독립된 거래이다. 그러므로 신용장과 같이, 독립적 보증도 독립추상성을 가지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법리가 독립적 보증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선국, 1994, p.108).

그러나 URDG는 서류의 위조나 사기에 의한 경우와 같이 독립적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그간 발생한 여러 중요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 못하며, 아울러 통일법이 아니라는 점 등 독립적 보증에 관한 완전한 규범으로서의 여전히 난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95년 7월 1일자로 동 규칙을 채택하여 ICC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아직 세계적으로 동 규칙을 채택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편 URDG의 서문에서도 保證信用狀은 이미 信用狀統一規則(UCP 400)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保證信用狀이 기술적으로는 독립적 보증의 개념 안에 있지만 독립적 보증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금융적,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독립적 보증보다는 貨換信用狀과 더 근접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므로 保證信用狀 개설인은 保證信用狀 특유의 조건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히 규율하고 있는 UCP를 계속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oy Goode, 1992, p.16).

---

5) URDG 제1조 및 2조.

### 3. 獨立的 保證 및 保證信用狀에 관한 UN 協約

保證信用狀과 독립적 보증은 그 광범위한 활용 실태나 중요성에 비추어 적용 규범이 충분치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유엔 국제거래법 위원회(UNCITRAL)은 1988년 제 21차 회의에서 보증과 保證信用狀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한 바 양자에 관한 좀 더 확실하고 통일된 규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 제정 작업을 실무위원회에 위탁하였다. 이리하여 保證信用狀과 기능이 유사한 독립보증서까지 적용될 수 있는 “독립적 보증과 保證信用狀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IGSLC)을 제정하여 1995년 12월 11일 UN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당시 ICC로서는 독립적 보증에 관하여 별도의 統一規則(URDG)을 두고 있으므로 保證信用狀의 경우는 信用狀統一規則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UCP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UNCITRAL이 제정한 동 UN 협약은 조약이므로 締約國이나 이에 가입하는 나라에서는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협약은 保證信用狀의 정의, 잠정적 법원의 조치 및 국제사법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保證信用狀 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는 信用狀統一規則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만을 記述하거나 국제적인 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박석재, 1999, p.510). 이처럼 여러 조항들이 분명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많아, 독립적 보증에 관한 많은 다툼이 예상된다(김선국, 1996, p.103). 아울러 본 협약은 5개국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을 발하게 되나 인준한 국가가 아직 3개국에 불과하다(Michael Dole, 1999, p.12). 비준한 나라가 소수에 불과해 가까운 장래에 保證信用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 4. 美國 統一商法典

信用狀統一規則(UCP)나 統一商法典 제5편(Uniform Commercial Code - Article 5 Letters of Credit: UCC)의 신용장에 관한 규정은 양자가 모두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은행의 실무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며, 특히 UCP의 1차 개정에서는 당시에 UCP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이 UCP를 채택할 수 있도록 미국의 상관행을 대폭 받아 들여 유럽의 관행과 조화되도록 하였으므로 양 규정의 내용이 상호 보완적인 면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UCP에서는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UCC 제5편에서는 신용장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양 규정은 규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충돌의 위험은 적은 것이다.

UCC 제5편은 保證信用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제정 당시 여러 종류의 신용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어서 保證信用狀에도 적용된다.

선적서류와는 대개 관계가 없고 기술적이고 법적 측면을 보다 포괄하는 保證信用狀의 특성상 UCP보다는 UCC쪽이 더 부합되는 점이 있지만 UCP의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및 면책조항에 관한 규정들은 保證信用狀에 적용되는 주요한 원칙들이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UCP는 범세계적으로 신용장거래의 준거가 되는 規準으로 되어 있어 미국의 대다수 은행들은 이 UCP를 준칙으로 삼고 있으며 UCC 제5편으로 인해 그 적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제적인 은행실무 상 이 두 규범이 충돌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국제무역거래가 빈번히 행해지는 뉴욕주 상법<sup>6)</sup>에서는 “UCP를 적용하기로 하는 신용장거래에 대하여는 UCC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up>7)</sup>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당사자가 UCP를 따르기로 합의하였다면 UCP가 UCC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UCC제5편은 UCP보다는 법적인 측면을 많이 규율하고 있지만, 예컨대 사기나 서류의 위조에 관한 조항이 애매모호 하다든지 保證信用狀과 관련하여

6) UCC의 일부 조항을 뉴욕주 의회가 수정하여 뉴욕주 법률로서 채택함.

7) 뉴욕주 UCC 제5-102조(4).



법적으로 중요한 결함을 갖고 있다(김선국, 1996, p.7). 미국의 많은 판례에서 保證信用狀은 UCP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미국의 은행들도 保證信用狀을 개설할 때 UCP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UCC를 배제하고 UCP를 적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UCC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UCP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며(Boris Kozolchyk, 1979, p.270). UCP를 준거법으로 채택하였더라도 UCP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UCP와 모순되지 않는 한, UCC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다.<sup>8)</sup> UCC가 비록 미국의 법이긴 하나 신용장에 관한 유일한 성문법이며, 국제거래에서 미국의 통상 및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막중하고 실제로 미국의 많은 판례가 국내의 판결에서 참조되고 있는 실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5. 信用狀統一規則

1933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을 거친 信用狀統一規則(UCP 500)에서 保證信用狀이 적용가능하다고 최초로 명시한 것은 4차개정(UCP 400, 1983)부터이다. 따라서 그동안 保證信用狀은 주로 이 貨換信用狀統一規則을 적용해 왔으나 그 운용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우선 이 貨換信用狀統一規則(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UCP)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 규칙은 상품의 매매거래에 사용되는 貨換信用狀(Documentary Credit)에의 적용을 위한 규정이다. 保證信用狀에 관한 조항은 단지 제1조에 이 규칙은 “모든 貨換信用狀(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保證信用狀을 포함하여)에 적용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保證信用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다. 즉, 貨換信用狀은 상품의 선적이 이루어진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동 규칙의 내용도 운송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 상품거래와 관련된 서류 및 선적 이행에 따른 규정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保證信用狀은 개설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를 수익자가 진술하는 不履行 確認書를 제시하여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8) 25 UCC Rep. Serv. 2d 896, 870, F. Supp. 1153(D Mass. 1994).

국제금융서비스협회의 Dan Taylor 회장은 “대부분의 保證信用狀은 UCP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UCP 규정의 50%는 保證信用狀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25%도 적절치 않을 뿐아니라, 거의 매일 保證信用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UCP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Biederman, David, 1999, p.17). 따라서 많은 保證信用狀이 UCP를 적용하여 발행되었음에도 UCP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때로는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으며,<sup>9)</sup> 이러한 이유로 商業信用狀에 비해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Biederman, David, 1999, p.17).

## 6. 保證信用狀規則의 制定

유럽에서는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請求保證을 사용하여 왔고, 상품매매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신용장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미국이외의 ICC 회원국들은 保證信用狀을 진정한 신용장으로서 인정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保證信用狀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또 그 거래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保證信用狀 거래에 주로 적용되어 왔던 UCP는 당초 商業信用狀을 위해 고안된 것이어서 保證信用狀거래에 많은 불편과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래서 保證信用狀에 UCP를 적용하려는 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네모난 막개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Biederman, David, 1999, p.17). 뿐만 아니라 “獨立的 保證과 保證信用狀에 관한 UN協約”(1995)의 제정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保證信用狀 거래의 실무 및 운용에 대한 심각한 이해부족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UCP 500으로의 개정시 미국의 신용장 관계자들이 ICC 은행위원회에 保證信用狀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무성이 “국제금융서비스협회”(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sup>10)</sup>와 “국제은행법 및 실무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의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계

9) Byrne, James E., “ISP98: New Standby Rules”, July 1999.(<http://www.abanet.org/ftp>).

10) 이전의 미국 국제은행협의회(The U.S. Council on International Banking, Inc.).

각국의 신용장 업계와 협의하여 保證信用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다.<sup>11)</sup> 이 제정 작업에는 UN을 비롯한 미국의 정부기관, ICC, 대기업, 학자, 신용평가기관, 법률가 등이 참여하여<sup>12)</sup> 5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98년도에 保證信用狀規則(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을 제정하고 ICC의 승인을 얻어(ICC Publication No. 590)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ICC가 ISP를 승인한 것은 保證信用狀에 UCP보다는 ISP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ISP는 保證信用狀과 이와 유사한 다른 약정(독립적 은행보증과 같은)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附從性 保證과 같은 비독립적 보증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ISP는 貨換信用狀에 사용되는 UCP와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保證信用狀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실무, 관행 및 관례를 규정한 것이지 법은 아니다. 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ISP의 특정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특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sup>14)</sup> ISP는 UCC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많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ISP는 제시된 서류의 眞正性을 입증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UCC에는 없는 내용이다.

ISP는 UCP와 양식과 접근 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保證信用狀은 개설의뢰인의 의무불이행이나 지급불능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한 신용장이므로 ISP는 商業信用狀거래와는 다른 엄격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송서류와 관계되는 본질적이고 쟁점이 되는 조항들을 포함한 UCP 500의 많은 규정들은 保證信用狀에 간단히 적용될 수 없다. 운송서류는 商業信用狀에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保證信用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保證信用狀에 적용하기 위해 UCP와는 별도의 규정이 UCP와 상호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ISP는 UCP보다 복잡하지만 보증에 관한 규정을 보다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명료화하여 공통적인 문제에 널리 수용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목표는 비슷하다. 그럼에도 保證信用狀과 貨換信用狀은 그 상업적 관행이 기본적

11) Byrne, James E., *op. cit.* (<http://www.abanet.org/ftp>).

12) Mary Whitney Kenney, "A Roadmap to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Commercial Law and Bankruptcy Section Newsletter*, Summer 1999. (<http://www.mckennacuneo.com/articles/>).

13) ISP 98 제 1.01 조.

14) ISP 98 제 1.05 조 (c), 제 8.01 조, 제 1.03 조.

으로 같으므로 ISP는 많은 부분에서 UCP와 일치한다. ISP는 다른 신용장 관계 법률과도 공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ISP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규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만일 다른 법률과 상충된다면, ISP는 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법률이 우선하게 된다.

#### IV. 貨換信用狀統一規則과의 主要 特性 比較

##### 1. 提出處의 營業中止 中 滿期

1980년대 이후에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여 정부의 중개로 다른 은행이 파산 은행을 떠 맡게 되거나 또는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리고 전쟁이나 전쟁과 유사한 상황(예를 들면 미국-이란 사건, 미국-베트남 전쟁 등)들이 발생하여 은행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은행들은 이따금 만기일이 영업일인지 아닌지를 달력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신용장을 발행하거나, 또는 은행이 이미 발행한 신용장의 만기일을 우연히 정부에서 공휴일로 채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그 어떤 경우든 UCP 500에서는 폭동, 천재지변, 전쟁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이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원인으로 은행업무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은행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다른 합의가 없다면,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 만기가 된 신용장을 인수하거나 매입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은행은 그러한 위험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UCP 500 제 17 조가 保證信用狀 사용자들에게는 부적절한 기준이어서 많은 수익자들은 이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제기해 왔다.<sup>16)</sup> 그래서 ISP 98은 UCP 500의 이러한 불가항력조항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ISP 98 제 3.14 조에서는 비록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保證信用狀에 명

15) UCP 500 제 17 조.

16) Byrne, James E., op. cit.(<http://www.abanet.org>)

시된 제출장소가 어떠한 사유로 업무를 중단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접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수익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保證信用狀에 달리 명기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경우 제출 만기일은 영업 재개 후 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제시를 못하게 된 사유가 제시 장소의 영업정지 때문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수익자는 제시장소가 문을 열었더라면 일치된 제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sup>17)</sup>

대개 保證信用狀은 수익자가 지급을 받기 위해 갖고 있는 마지막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설인이 업무정지 중일 때 保證信用狀의 만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30 일이나 연장을 해야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므로 기간을 줄이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保證信用狀의 수익자인 정부기관과 보험회사들이 30일간의 연장을 요구했다(Mary Whitney Kenney, Neal S. Millard, Janis S. Penton, 1999, p.16). 대금결제 청구의 만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UCP 500의 경우와 유사하여 자동적으로 그 은행의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sup>18)</sup>

## 2. 書類의 發行人

신용장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서류 발행인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적절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商業信用狀에서는 운임지급영수증의 제시를 요하거나 保證信用狀에서는 대금청구서나 불이행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서류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領收’, ‘支給’, ‘代金請求’, 또는 ‘不履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문언이나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하여 놓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러한 경우, UCP 500에서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다른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한다면 일치되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이 접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류의 발행인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행인이 누구여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19)</sup>

17) Mary Whitney Kenney, op. cit. (<http://www.mckennacuneo.com/articles/>)

18) UCP 500 제 44 조, ISP 98 제 3.13 조.

이와는 달리 ISP 98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에 서류를 발행하는 유일한 당사자가 수익자라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제출서류는 수익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保證信用狀이 서류의 발행인을 명시하고 있거나, 保證信用狀의 관행이 제3자가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sup>20)</sup>

기재내용이나 서류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신용장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ISP 98보다 차라리 UCP 500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保證信用狀 거래의 관행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류를 특정인이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保證信用狀에는 서류 발행인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었을 때 서류 발행자가 그 특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개설은행은 분쟁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의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이다.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데 본인의 主觀的 判斷을 배제하여야 하며,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해 책임을 가지므로 신용장의 조건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이 받고자 하는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자는 대금지체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 3. 書類의 一致

대체로 UCC보다 UCP를 더 답습하고 있는 ISP 98은 제출된 서류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UCC에서는 개설은행이 지급청구를 검토할 때 표준적인 관행을 따르되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sup>21)</sup> 그러므로 일부 법원에서 채택한 '相當一致'의 원칙이 UCC의 이 조항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각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설인은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표준적 관행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사소한 작성 상의 실수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sup>22)</sup>

19) UCP 500 제 21 조.

20) ISP 98 제 4.05 조.

21) UCC 제 5 - 108 조 (a).

22) UCC Comments, Section 5-108, paragraph 1.

UCP 500에서는 은행이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서류의 일치여부를 문면상으로 확인하기 위해 合理的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일치여부는 UCP 500에 반영된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3)</sup> UCP 500에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승낙을 위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대금지급의 거절을 고려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송장에 명시된 상품포장 내역이 포장명세서의 내역이나 운송서류상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다른 기관에서 작성한 것처럼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동일한 상품의 포장명세서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UCP 500 제 13(a)는 제시된 서류는 서로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ISP 98 제 4.03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생략하였다. 商業信用狀의 경우 제출서류에는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이 있다. 제출서류가 일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어음발행이 동일한 운송인에 의해 선적된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임을 보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라면 서류일치 요구는 합리적이며 서류 검토인이 쉽게 수용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保證信用狀의 환경에서는 제출이 이행을 요구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불이행을 표시하는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서류라면 상호 불일치하게 보일 수 있으며 원인거래의 범위 내에서 일치성을 결정할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서류 검토인이 원인거래의 세부사항을 일일이 알 수 없고, 따라서 일치성 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또 서류 검토인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ISP 98 제 4.03은 保證信用狀에 더 적합한 대안이 된다.

한편 ISP 98 제 4.01(b)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일치여부는 保證信用狀의 조건과 문면 상 일치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결정하며, 保證信用狀은 保證信用狀의 표준적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이 ISP 98에 의해 해석되고 보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이 조항은 상당일치의 표준보다 엄격하기는 하지만 엄격일치 기준

23) UCP 500 제 13 조 (a).

24) Byrne, James E., op. cit.(<http://www.abanet.org/>)

25) Robert J. Spjut, “Standby Letters of Credit”, May, 1999.(<http://pillsburylaw.com/articles>).

26) ISP 98 제 4.01 조 (b).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며,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하며 구체적이지 못하다.<sup>27)</sup>

가끔 保證信用狀에서는 입증에 관한 정확한 표현도 명시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지급청구서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상품의 명세가 대개는 신용장에 명시되는 貨換信用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UCP 500에서는 송장의 상품명세가 신용장과 불일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ISP 98에서는 “제시된 서류의 문언이 保證信用狀이 요구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엄격일치나 엄밀일치의 원칙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것이다.<sup>29)</sup>

이같은 견지에서 제출서류가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UCP 500 제 21 조항도 商業信用狀의 경우에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서류가 엄격히 일치해야 할 필요가 商業信用狀과는 다른 保證信用狀 거래에서는 적절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分割船積 및 분할 어음發行

商業信用狀에서는 일정기간 여러 차례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 후에 바로 각각의 선적 분에 대한 대금결제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保證信用狀(특히 직접지급신용장)도 어음을 분할하여 발행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다.

분할선적이나 분할어음발행이 가능한 신용장에 있어서 수익자가 부주의하였을 경우의 함정이 바로 UCP 500 제 41 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용장이 어음발행이나 선적을 분할하여 할 것을 명시한 경우, 어음발행이나 선적이 이 명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의 분할 선적과 분할 어음발행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임대료에 사용되는 직접지급신용장 하에서 만일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한 매월의 수수료 지

27) ISP 98 Official Commentary, Rule 4.01, Paragraph 1.

28) UCP 500 제 37 조 (c).

29) ISP 98 제 4.09 (a).



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지불하였을 때, 만일 UCP 500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 41 조를 배제한다는 문언을 넣지 않았다면 수익자는 현금을 받음으로써 신용장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ISP 98은 수익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ISP 98에서는 수익자가 제출을 못하였거나 제출을 철회하였거나 또는 요구나 허용된 바에 따른 분할 어음발행이나 제시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수익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0)</sup>

## 5. 信用狀 및 代金の 讓渡

수익자가 신용장에 의한 권리양도 자격을 가지면, 원인계약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법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신용장 관련 규칙 및 실무에서는 신용장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UCC와 UCP 500에서와 같이, ISP 98도 保證信用狀의 양도가능성을 확대하지 않고, 신용장의 양도를 제한하는 UCP 500의 규칙을 일부 수정하였다.<sup>31)</sup>

ISP 98을 채택한 신용장은 UCP 500을 채택한 신용장과 같이 신용장에서 양도가 가능하다는 명시 없으면 양도될 수 없다.<sup>32)</sup> UCP 500에서는 분할양도는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반면에 ISP 98을 적용하는 保證信用狀은 분할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나 1회 이상 양도될 수는 있다.<sup>33)</sup> 貨換信用狀은 여러 번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保證信用狀은 대개 그렇지 않은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ISP 98은 양도가 保證信用狀의 조건 변경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이론에 따라 어떤 요구 서류에도 양도인의 명의를 양수인의 명의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UCP 500은 신용장에서 본질적으로 양도인의 명의를 요하는 어떤 서류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保證信用狀을 사용하는 거래 당사자는 당해 거래

30) ISP 98 제 3.07 조 (a).

31) Robert J. Spjut, op. cit. (<http://pillsburylaw.com/articles>).

32) UCP 500 제 48 조 (b), ISP 98 제 6.02 조 (a), UCC 제 5 - 112 (a).

33) UCP 500 제 48 조, ISP 98 제 6.02 조.

의 전체적인 특성에 따라 신용장이 ISP 98나 UCP 500 중 하나를 적용하여 발행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ISP 98과 UCP 500은 신용장의 양도시에 개설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sup>34)</sup> ISP 98은 일단 신용장이 정당하게 양도되면, 이전 수익자의 이름과 서명은 새로운 수익자의 이름과 서명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경우의 제시는 신용장의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5)</sup> ISP 98은 신용장에 양도가 능여부가 명기된 것과는 관계없이, 법률적 효력에 의한 신용장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sup>36)</sup> 상속법인, 파산 관재인, 유산 집행인, 유산 수령인이나 법정상속인 또는 무능력 수익자의 보호자는 법률적 효력에 의한 讓受人들이다. 서류 제출시 讓受人이 수익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거나, 讓受人의 이름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일치된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의한 讓受人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제시할 수 있다. ISP 98은 UCP 500과 달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서류는 법적 효력에 의한 승계자가 정당한 승계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UCP 500과 같이 ISP 98은 신용장에 의한 대금양도와 신용장 자체의 양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대금양도에 관하여 UCP 500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양도는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대금의 청구권만을 다른 讓受人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 讓受人은 어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일치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ISP 98에서는 개설인이나 다른 지정인은 요청한 대금양도를 이행하거나 승인할 의무가 없으며,<sup>37)</sup> 대금양도가 승인될 때까지 개설인(또는 다른 지정은행)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UCC는 지정인이 대금양도에 대한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sup>38)</sup>

34) ISP 98 제 6.02 조 (b), UCP 500 제 48 조 (c).

35) ISP 98 제 6.03 조, 6.04 조.

36) UCC 제 5 - 113 조. ISP 98 제 6.11 조.

37) ISP 98 제 6.07 조 (a).

38) UCC 제 5 - 114 조 (d).

## 6. 書類檢討 및 支給拒絶 通知 期限

개설인의 서류검토 시한은, 개설인이 정해진 기한 내 서류검토를 못하거나 서류의 미비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개설인이 서류의 미비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SP 98은 UCP 500의 이러한 규칙을 답습하였다.<sup>39)</sup>

保證信用狀 하에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개설인은 지급청구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검토기간이 차이가 있게 된다. UCP 500에서는 각 은행(개설인, 확인은행 및 지정은행)이 7은행영업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를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7은행영업일이 검토시한이긴 하지만, UCP 500의 규정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모든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당연히 7일을 전부 소비하거나 6일까지 기다렸다가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이라 함은 서류의 제시, 종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7일의 기한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sup>40)</sup>

ISP 98은 이 의무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거절의 통지는 서류 제시 후 비합리적이지 않는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41)</sup> ISP 98에서는 3일 이내의 기간은 ‘비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7일을 초과한 기간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상황에 따라 3영업일을 초과한 기간도 합리적일 수 있다.<sup>42)</sup> 3영업일이 짧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대체로 保證信用狀의 서류 요건은 간단하므로 3일간은 충분히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급거절 기한의 시작은 UCP와 UCC를 따라, 제시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sup>43)</sup>

39) ISP 98 제 5.03 조, UCP 500 제 14 조 (e), UCC 제 5 - 108 조 (c).

40) Robert J. Spjut, op. cit. (<http://pillsburylaw.com/articles>).

41) ISP 98 제 5.01 조 (a).

42) ISP 98 Commentary, Rule 5.01, Paragraph 6.

43) ISP 98 제 5.01 조 (a) (iii).

## 7. 書類提示 有効期限

UCP 500에서는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선적일 이후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출된 서류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4)</sup> 이 조항은 기한경과 서류에 대해 貨換信用狀의 개설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保證信用狀의 수익자들은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保證信用狀에 의해 제출된 대금 청구 서류는 개설의뢰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한이 경과되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CP 500을 保證信用狀에 적용한다면, 이를 규정한 제 43조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ISP 98을 적용한 保證信用狀을 재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8. 償還義務

ISP 98은 일치된 서류를 제출받아 개설인이 지급한 대금을 개설의뢰인이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UCC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UCC에서 개설인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한 어음대금을 대금지급의 기일 내에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5)</sup> UCP 500은 일치된 서류에 대해 대금을 지불한 어느 지정은행에 대해서도 개설인은 상환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sup>46)</sup> 개설인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상환의무는 규정된 바가 없다.

ISP 98은 일치된 서류에 대해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지급이 이행되어야 하는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다.<sup>47)</sup> ISP 98이 상환에 관한 약정, 업무처리 절차, 실무, 관습이나 관례를 보충하는 것이지만<sup>48)</sup> 그 점은 保證信用狀에

44) UCP 500 제 43 조.

45) UCC 제 5-108 조 (i) (1).

46) UCP 500 제 14 조 (a).

47) ISP 98 제 8.01 조 (a).

48) ISP 98 제 8.01 (c).

의한 대금지급 당일에 개설인에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UCC의 개설의뢰인의 의무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물론 개설인으로서 상환이행기한을 개설의뢰인과의 약정에 명시하고자 할 것이다.

ISP 98이 개설의뢰인에게 광범위한 보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서는 UCP 500을 따르고 있다. UCP 500은 첫째, 개설의뢰인에게 외국의 법과 관례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은행에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9)</sup> 둘째, 개설의뢰인은 본인이 요구한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개설인이 부담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sup>50)</sup>

ISP 98은 개설의뢰인이 단지 개설인에만 보상토록 한 점에서는 UCP 500보다 보상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법과 관습의 위배뿐 아니라 다른 당사자의 사기, 위조 또는 불법행동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확인은행의 의무를 개설인이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개설의뢰인이 보상하도록 보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UCP 500보다 광범위한 책임을 개설의뢰인에게 부과하고 있다.<sup>51)</sup> 뿐만아니라 개설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통지, 확인, 지급, 매입, 양도 또는 별도의 보증발행에 따른 발생 비용을 개설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sup>52)</sup>

## 9. 責任의 限界

신용장거래의 모든 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이 개설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행되기까지 각종 서류의 효력, 송달 중의 사고, 불가항력 그리고 타은행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설의뢰인에 대한 개설인의 책임에 관해 ISP 98에서는 UCP 500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UCP 500에서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상에 규정되었거나 이에 追記된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49) UCP 500 제 18 조 (d).

50) UCP 500 제 18 조 (c) (i).

51) ISP 98 제 8.01 조 (b).

52) ISP 98 제 8.02 조 (b).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3)</sup> 또 개설인이 主導적으로 은행을 선정하였다라고 그 은행이 개설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데 대해 그에 대한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sup>54)</sup>

ISP 98에서 개설인은 원인거래의 이행이나 불이행, 保證信用狀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의 정확성, 진정성 및 그 효력, 개설인이나 지정된 자가 선정한 다른 사람의 행위나 태만, 保證信用狀에서 채택하지 않았거나 신용장 개설지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나 관행의 준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5)</sup>

그러나 UCP 500에서는 ISP 98에서 규정되지 않은 면책조항이 있다. 은행은 모든 통신, 서신이나 서류 송달 중의 지연이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또는 모든 전신 송달 중에 발생하는 지연, 훼손이나 다른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sup>56)</sup> ISP 98은 保證信用狀의 전자적 송신, 전자적 제시 그리고 전자신용장의 양도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의 은행의 책임은 정보가 완전하며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국한된다. 다만, 배서를 추가하거나 정상적으로 정보를 전달, 저장 그리고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은 예외로 한다.<sup>57)</sup>

## 9. 信用狀의 共同發行과 持分參與

UCC나 UCP 500와는 달리 ISP 98은 개설인이나 확인인은 서류를 제시받은 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保證信用狀의 공동발행이나 지분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인 이상이 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保證信用狀을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체로 保證信用狀은 제시되어야 할 개설인과 지정인의 지분과 책임을 명시한다. 그러한 명시가 없으면 수익자는 어느 신용장에 대해서도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모든 개설인은 연대 및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sup>58)</sup>

53) UCP 500 제 15 조.

54) UCP 500 제 18 조 (b).

55) ISP 98 제 1.08 조.

56) UCP 500 제 16 조.

57) ISP 98 제 1.09 조 (c).

개설인은 다른 기관과 지분참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신용장의 '위험 지분참여'를 발행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때의 참여 기관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금액을 개설의뢰인(확인신용장의 경우는 개설인)이 정해진 기일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어음 금액에 대한 지분참여자의 할당액을 개설인(또는 확인인)에게 지급한다. ISP 98에서는 개설인과 개설의뢰인이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지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sup>59)</sup> 그러한 지분 매각을 제외할 때, 개설인은 적용되는 은행 비밀법이나 개설의뢰인과의 협정에 비밀로 되어있더라도, 개설의뢰인과 신용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up>60)</sup> 개설의뢰인이 그러한 정보제공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개설인과의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10. 其他

ISP 98 제 5.07 조항에서는 UCP 500과 UCC의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하였다.<sup>61)</sup> ISP 98의 동 조항에 의하면 서류 검토인은 지급거절된 서류의 처분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UCP 500과 UCC에서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할 때, 은행이 제시인의 처분에 의해 서류를 은행에서 그냥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인지를 문의하여야 한다. UCC의 관련조항에서는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sup>62)</sup>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保證信用狀에 의해 발행된 서류는 본래 有價性의 서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保證信用狀의 일부 조항은 개설인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상환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설인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sup>63)</sup> 이러한 일방적 포기 가능 조항 중에서 이를테면 개설인이 영업종료 후에 제시된 서류를 당일 제시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sup>64)</sup> 保證信用狀에서 정한 제시 국가를 제외하고 제시장소와 제시받을 사람을 포기하는 것을 ISP 98에서 허용하고 있다. ISP 98은 또한

58) ISP 98 제 10.01 조 (a).

59) ISP 98 제 10.02 조 (a).

60) ISP 98 제 10.02 조 (b).

61) UCP 500 제 14 조 (d) (ii), UCC 제 5 - 108 조 (h).

62) UCC 제 5 - 103 조 (c).

63) ISP 98 제 3.11 조 ~ 제 3.15 조.

64) 수익자가 만기일에 서류제시를 하더라도, 신용장은 영업종료와 함께 만료된다(ISP 98 제 9.04 조).

개설인이 제시일 이후의 일자로 표기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며, 保證信用狀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기재된 서류를 접수하는 것과, 경우에 따라 전자매체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포기 가능조항은 주로 개설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ISP 98에서는 또 UCP 500와는 달리 취소불능신용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65)</sup>

ISP 98 사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 첫째, UCC와 UCP 500양자가 20년 이상의 법적 해석이 축적되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SP 98은 새로운 규칙이어서 법정과 법률가들은 그 규칙이나 동 규칙의 적용에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분간 UCP 500을 保證信用狀에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은행의 신용장 업무부서가 ISP 98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ISP 98을 숙지하여 매일의 업무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ISP 98은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며, 또 각국의 국내법에 맞기는 것이 좋다는 규정을 갖고 있어 경우에 따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ISP 98은 保證信用狀 거래를 단순화하는게 아니라 또 다른 신용장규칙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sup>66)</sup>

대체로 ISP 98 제정으로 가장 유리한 신용장거래 당사자는 개설인이며 그 다음이 수익자, 그리고 개설의뢰인의 순이다. 그리고 保證信用狀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유럽지역 같은 곳에서는 아직은 이 규칙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포함하여 ISP 98과 UCP 500의 주요 특성상의 차이는 <표-2>와 같다.

---

65) ISP 98 제 1.06 조.

66) Mary Whitney Kenney, Neal S. Millard, Janis S. Penton, A View from the Trenches: Practice Pointers for ISP98, *Documentary Credit World*, October 1999, p.15.



<표-2> ISP 98과 UCP 500의 主要 特性 比較

구분	ISP98		UCP 500	
	관련 조항	내 용	관련 조항	내 용
적용 대상	제1.01조	保證信用狀과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다른 유사한 보증	제1조	貨換信用狀(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증신용장)
취소가능여부	제1.06조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 불능임.	제6조 제8조	취소가능이나 또는 취소가능함.
제출처의 영업증지증 만기도래	제3.14조	제출 만기일은 영업재개 후 30일까지로 연장	제17조	불가항력으로 일시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만기 연장은 불가함
서류의 발행인	제4.05조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서류는 수익자가 발행	제21조	발행인이 다수일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규정하지 않음
서류의 일치성	제4.01조 제4.03조	원인 거래의 불이행을 표시하는 서류가 포함될 경우, 상호 불일치하게 보일 수 있음	제13조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여야 함
분할선적, 분할어음발행	제3.07조	정해진 분할어음발행이나 서류제출을 못한 경우에도 신용장이 失効되거나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제41조	선적이나 어음발행을 기한내 하지 못할 경우, 이후의 분할선적과 어음발행은 효력상실
신용장의 양도	제6.02조	분할양도는 불가, 1회 이상의 양도는 가능	제48조	분할양도는 가능, 1회 이상의 양도는 불가
유효기일 경과서류	없음	보증신용장의 특성상 제서류는 대체로 기한 경과 후 제출됨	제43조	유효기일이 경과된 서류는 수리 거절됨
지급거절의 통지	제5.01조	지급거절의 통지는 서류제시 후 비합리적이지 않는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은 비합리적이 않음.	제14조	지급거절의 통지는 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7은행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개설의뢰인의 개설인에 대한 상환의무	제1.04조 제8.01조	개설인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상환의무와 광범위한 보상의무를 규정	제14조	지정은행에 대한 개설인의 상환의무만 규정

자료 : 필자 작성

## V. 結論

保證信用狀은 원래 개설의뢰인의 각종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용도로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용 비용이 저렴하고, 취급이 간편하여 현재는 일반 물품 매매거래의 대금결제에까지 商業信用狀을 대신하여 사용되며, 또 그 거래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保證信用狀 거래에 지금까지 주로 UCP를 적용해 왔으나 문제가 있어 새로이 保證信用狀規則을 제정, 1999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UCP에는 保證信用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UCP가 원래 상품매매에 사용되는 貨換信用狀 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保證信用狀의 관습과 실무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ISP 98나 UCP가 기본적으로 신용장거래에 관한 규범이어서 서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ISP 98은 주로 다음과 부분에서 UCP 500에 비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UCP 500에서는 天災地變이나 罷業과 같은 不可抗力으로 개설인이一時 營業을 중지하게 된 기간에 신용장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ISP 98에서는 이 같은 경우 만기일은 營業 재개 후 30일까지 연장된다.

둘째, UCP 500에서는 서류의 발행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ISP 98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에 제출 서류는 수익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UCP 500에서는 제출 서류가 서로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ISP 98에서는 保證信用狀은 그 특성상 제출서류가 서로 불일치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UCP 500에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분할선적과 분할어음발행이 명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분할선적과 분할어음발행은 효력을 상실한다. ISP 98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섯째, UCP 500에서는 복수의 분할양도가 가능하지만 한번 양도받은 신용

장을 재차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ISP 98에서는 분할양도는 금하되, 대신 한번 양도받는 신용장을 다시 양도할 수 있다.

여섯째, 개설인의 서류검토기간에 대해 UCP 500에서는 7 은행영업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리고 ISP 98에서는 비합리적이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은 비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곱째, UCP 500에서는 지정은행에 대한 개설인의 상환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ISP 98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설인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상환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ISP 98에서는 개설인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광범위한 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덟째, ISP 98에서는 UCP 500와는 달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개설인이 신용장을 공동으로 개설하거나 다른 기관과 지분참여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ISP 98은 保證信用狀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保證信用狀과 관계된 지금까지의 규칙을 保證信用狀에 보다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保證信用狀 고유의 관행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직 ISP 98에 대한 법적 해석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으므로, ISP 98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의 사용목적을 반영하여 ISP 98의 일부조항을 적절히 첨삭 또는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하에 UCP 500의 일부조항을 채용해도 좋을 것이다. 개설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ISP 98을 개설인의 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도 좋을 것이나, 개설의뢰인은 개설의뢰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UCP 500의 관련조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 고중현, “보증신용장의 지급”,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선국,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비교사법, 제3권 1호, 1996. 6.
- \_\_\_\_\_, “청구(요구불)보증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경남법학, 제10호, 1994. 12.
- 김용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석재,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2호, 1999. 2.
- \_\_\_\_\_,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양영환·서정두, 국제무역법규, 삼영사, 1998.
- 대한상공회의소, 스탠드-바이 신용장 통일규칙, 1999.
- B. G. Affaki, “How do the ISP standby rules fit in with other uniform rules? Georges Affaki reports”,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 5 No 1, Winter 1999.
- Biederman, David, “Shippers: Standby for ISP98”, *Traffic World*, Vol. 257 No. 1., Jan. 1999.
- Boris Kozolchyk, “Legal Aspects of Letters of Credit and Related Secured Transactions”, 11 *Lawyer of the America*, Univ. of Miami, 1979.
- Byrne, James E., “ISP98: New Rules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TMA Journal*, Sep/Oct. 1999, Vol. 19 Issue 5.
- \_\_\_\_\_, “ISP98: New Standby Rules”, July. 1999.(<http://www.abanet.org/ftp>).
- Cherian Thomas, “Standby credit is like an umbrella”, August 1999. (<http://www.business-standard.com>).
- Hollis, Kerissa, “Standby Letters of Credit subject to new set of rules”, *Memphis Business Journal*, August. 1999, Vol. 20 Issue 36.
- J. F. Dolan, *The Law Letters of Credit*, 2nd ed., Warren, Gorhan & Lamont, 1991, para.1:06, pp.1-22~1-23.
- Mary Whitney Kenney, “A Roadmap to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Commercial Law*

- and Bankruptcy Section Newsletter*, Summer 1999.(<http://www.mckennacuneo.com/articles>).
- Mary Whitney Kenney, Neal S. Millard, Janis S. Penton, "A View from the Trenches: Practice Pointers for ISP98", *Documentary Credit World*, October 1999.
- Michael Dole, "ISP98: A Recipe for Disaster", *Letter of Credit Update*, March 1999.
- Michael Evan Avidon, "Getting Ready for ISP?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Documentary Credit World*, October, 1999.
- Morphy, Erika, "Do Standbys Deliver?", *Export Today*, Nov. 1998, Vol. 14 Issue 11.
- Philip De Chiara,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a Reality", *Norwest Worldview The Newsletter*, Second Quarter(June), 1998, Vol. 5, No. 2
- Robert J. Spjut, "Standby Letters of Credit", May 1999.(<http://pillsburylaw.com/articles>).
- Rose, Peter S., "Searching for Safety in a Dangerous Marketplace", *Canadian Banker*, Jan/Feb. 1990, Vol. 97 Issue 1.
- Roy Goode, *Guide to the ICC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shing No. 458, 1992, p. 16.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http://www.access.gpo.gov/nara>).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UCP 500-*

Lee, Choong-Yeol

Many problems and complaints have been caused by applying the UCP to the standby credit. To solve the problem,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were established. ISP and UCP are similar in that both of them generally regulate the transaction of credit. However, when the ISP is compared with the UCP, the following features are found :

1. In the UCP, when Force Majeure such as acts of God or strikes cause temporary work stoppage, the expiration date cannot be extended. In the ISP, the expiration date can be extended to 30 days after the place for presentation re-opens for business in the same situation.

2. The UCP does not specify who the issuer of a document must be because there can be many issuers of documents. In the ISP, it is specified that all required documents are to be issued by the beneficiary.

3. In the UCP, compliance between presented documents is required. In the ISP, a discrepancy between presented documents is allowed.

4. In the UCP, if drawings and/or shipments are required by a credit to be made in instalments, and a required drawing/instalment is not made, the credit ceases to be available for any subsequent instalment. In ISP, there is no loss of effect and no influence on the right of beneficiaries, even in the same situation.

5. In the UCP, multiple transfers are not permitted, but partial transfers are. ISP states just the opposite. Multiple transfers are permitted, but partial transfers are not.

6 The UCP obligate each bank (issuer, confirming and nominated bank)

to complete their review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not more than seven banking days. In the ISP, less than three business days is deemed to be not unreasonable and more than seven days is deemed to be unreasonable.

7. ISP, unlike UCP, recognizes that issuers and confirmers may spread their risk through syndication and participation of standby credits.

However,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the ISP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before application. If necessary, a partial addition or modifications can be made. Usually, the best advantage of the ISP is given to the issuers. A positive use of the ISP can be made by issuers but, applicants should consider using the UCP to the their rights and duties.

Keywords :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 Standby Credit
---